

IFRS in Focus

IASB, 금융부채의 회계처리를 반영한 개정 IFRS 9 발표

목차

- 도입
-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효과의 표시
- 파생상품부채를 원가로 측정하는 예외규정의 삭제
- 시행일과 경과규정

IAS Plus website

We had over 12 million visits to our www.iasplus.com website. Our goal is to be the most comprehensive source of news about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on the internet. Please check in regularly.

For more useful information please see the following website:

www.iasplus.com
www.deloitte.com

요점

- IAS 39에 포함된 금융부채의 분류기준은 변경되지 않고 IFRS 9에 포함되며 IAS 39의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범주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범주 분류는 유지된다.
- 공정가치옵션(fair value option)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회계불일치를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직접 인식한다.
- 부채가 결제되거나 소멸되는 시점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 신용위험과 자산특유의 이행위험(asset-specific performance risk)을 구분하기 위해 신용위험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
-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지분상품(unquoted equity instrument)의 인도로 결제되는 파생상품부채를 원가로 측정하는 IAS 39의 예외규정은 삭제된다.
- 개정 기준서의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이다.

도입

2010년 10월 28일, IASB는 개정된 IFRS 9 '금융상품'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기준서에는 2009년 11월에 발표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관한 규정 외에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지침을 추가하고 있다. IFRS 9 재구성의 일환으로 IASB는 또한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금융상품 제거에 대한 지침과 이에 관련된 실무적용지침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IFRS 9에 포함시켰다.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된 IFRS 9의 지침은 현행 IAS 39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부채의 분류기준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금융부채는 전체 또는 일부를 상각후원가나 당기손익인식항목(FVTPL)으로 계속 측정한다.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서 분리하는 개념도 변경되지 않는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held-for-trading) 금융부채는 계속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하며, 그 밖의 모든 금융부채는 공정가치유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현행 IAS 39 기준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IAS 39와 다른 점이 2가지 있다.

- 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에 대한 표시
-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는 파생상품부채를 원가로 측정하는 예외규정의 삭제

이번에 개정된 지침으로 기존 금융상품 기준서인 IAS 39를 대체하기 위한 IASB의 포괄적 프로젝트 중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다. 다음 단계인 손상과 위험회피회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효과의 표시

(The presentation of the effects of changes in a liability's credit risk)

부채의 신용위험에 관한 개정된 지침은 FVTPL로 측정되는 모든 부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파생상품부채와 같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부채나 공정가치유선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과 같은 금융부채는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모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이다. 공정가치유선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그 밖의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부채의 신용위험에 관한 개정된 지침이 적용된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평

IASB가 상기 지침을 발표하게 된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직관에 반하는 (counterintuitive)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기업은 부채의 공정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익(신용상태의 악화로 인한 이익으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손실을 잠재적으로 상쇄한다)을 인식하는 반면 신용도가 개선되면 손실을 인식하는 결과가 발생한다(신용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잠재적으로 불분명하게 한다).

그러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회계불일치를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킨다면 기업은 모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회계불일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업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효과가 다른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과 상쇄될 것으로 기대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부채의 특성과 다른 금융상품의 특성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하며 후속적으로 재평가하지 않는다. 기업은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논평

프로젝트 중 이번 부분을 개정하는 동안 IASB가 논의한 사례 중의 하나가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모기지 금융(mortgage funding)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사례에서 모기지 은행은 고객에게 대출하고 해당 대출채권(mortgage loan)과 동일한 조건(예를 들어, 잔액, 기간, 통화 및 상환조건)의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대출채권의 조건에는 차입자가 특정 채권을 공정가치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의 중도상환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 채권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효과와 대출채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계약상 연관되어 있다. 공정가치유선을 적용한 결과 은행이 채권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반면 대출채권의 모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면, 결과적으로 회계 불일치가 발생할 것이다.

IFRS 9에서는 신용위험과 자산특유의 이행위험(asset-specific performance risk, 다시 말하면 단일의 자산 또는 자산집합이 이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금융상품 발행자가 당해 자산에 연계된 의무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면제받는 위험)을 구분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IFRS 9에서는 자산특유의 이행위험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논평

IFRS 9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산특유의 이행위험에 대한 사례 중의 하나가 특수목적기업(SPE)이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SPE가 보유한 자산을 법적으로 별도 분리하는 경우 SPE가 발행한 채권이다. SPE와 분리되어 있는 (ring-fenced) 자산이 현금흐름을 창출한다면 이러한 금액은 채권투자자에게만 지급된다. 자산이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SPE는 투자자에게 채권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산의 이행(performance) 여부가 채무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채권에 내재된 위험은 자산특유의 이행위험으로 간주된다. 신용위험과 자산특유의 이행위험 간의 차이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채의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상 금액이 자산의 이행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다면 해당 위험은 자산특유의 이행위험이 아니라 신용위험으로 간주될 것이다.

개정된 지침은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이는 만기 이전에 금융부채를 계약상 상환해야 할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제거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잔여 금액은 자본의 다른 항목(예를 들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대체된 금액과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반면에 기업이 만기에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를 상환한다면 재분류될 금액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누적 효과는 영(0)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IFRS 9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분리하는 방법에 관한 IFRS 7 '금융상품: 공시'에 포함된 기존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IFRS 7은 다음 2가지 기법을 허용하고 있다.

- 1) 시장위험(기준이자율(benchmark interest rate)의 변동, 다른 기업의 금융상품 가격, 상품가격, 환율 또는 가격이나 비율의 지수 등)의 변동에 기인하지 않은 공정가치의 변동
- 2) 신용위험을 보다 충실하게 나타내는 대체적인 방법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은 공시해야 한다.

파생상품부채를 원가로 측정하는 예외규정의 삭제 (The elimination of the cost exemption for derivative liabilities)

IFRS 9의 금융자산 부분에서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다면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지분상품과 관련 파생상품자산을 원가로 측정하는 IAS 39의 예외규정이 삭제되었다. IFRS 9의 금융상품 부분이 발표되었을 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으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될 파생상품부채(예를 들어, 옵션 행사시 기업이 옵션 보유자에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지분상품을 인도해야 하는 매도옵션)를 원가로 측정하는 예외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파생상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 이러한 원가측정에 대한 예외규정이 삭제되었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개정된 IFRS 9의 시행일은 개정 전 IFRS 9의 시행일(즉, 2013년 1월 1일)과 동일하다. IASB는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의 모든 단계에 대한 시행일을 동일하게 정할 의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개정된 IFRS 9의 초기적용은 허용되지만 기업이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과 관련된 지침을 초기에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과거에 완료된 IFRS 9의 규정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IFRS 9의 금융부채에 대한 지침을 초기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금융자산에 대한 지침도 초기에 적용해야 한다. 이전 단계의

적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개정 기준서는 IAS 8에 따라 소급적으로 적용한다.

주요 연락처

IFRS global office

Global IFRS Leader – Clients and Markets

Joel Osnoss

ifrsglobalofficeuk@deloitte.co.uk

Global IFRS Leader – Technical

Veronica Poole

ifrsglobalofficeuk@deloitte.co.uk

Leader – Global IFRS Communications

Randall Sogoloff

ifrsglobalofficeuk@deloitte.co.uk

IFRS centers of excellence

Asia-Pacific

<i>Korea</i>	이길우	kilwlee@deloitte.com (Tel: 02 6676 3980)
<i>Hong Kong</i>	Stephen Taylor	iasplus@deloitte.com.hk
<i>Melbourne</i>	Bruce Porter	iasplus@deloitte.com.au
<i>Tokyo</i>	Shinya Iwasaki	iasplus-tokyo@tohmatu.co.jp

Americas

<i>New York</i>	Robert Uhl	iasplusamericas@deloitte.com
<i>Montreal</i>	Robert Lefrancois	iasplus@deloitte.ca
<i>Buenos Aires</i>	Fermin del Valle	iasplus-LATCO@deloitte.com

Europe-Africa

<i>Brussels</i>	Laurent Boxus	BEIFRSBelgium@deloitte.com
<i>Copenhagen</i>	Jan Peter Larsen	dk_iasplus@deloitte.dk
<i>Frankfurt</i>	Andreas Barckow	iasplus@deloitte.de
<i>Johannesburg</i>	Graeme Berry	iasplus@deloitte.co.za
<i>London</i>	Elizabeth Chrispin	iasplus@deloitte.co.uk
<i>Madrid</i>	Cleber Custodio	iasplus@deloitte.es
<i>Moscow</i>	Michael Raikhman	iasplus@deloitte.ru
<i>Paris</i>	Laurence Rivat	iasplus@deloitte.fr
<i>Rotterdam</i>	Ralph ter Hoeven	iasplus@deloitte.nl